

퇴보하는 환경정책, 끝이 안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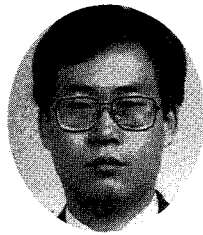
국 제적추세에 비추어볼 때 그나마도 늦게 제정되었던 환경규제법안들이 「신경제」에 밀려 완화되어가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만에 각종 환경규제가 나사 풀리듯 풀려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환경운동에 힘입어 제정되었던 각종 환경규제법안들이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미명하에 속속 개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배출 방지시설의 사전허가제폐지 등 36개의 환경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지난 7월 31일 규제완화내용이 담긴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으며, 올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정부가 범부처차원의 행정규제완화를 추진한 이래 환경처에는 그동안 전경련·상의 등을 통해 무려 5백여건의 규제완화요구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경제기획원·상공부와 협의된 거친 36개의 규제가 풀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규제완화조치도 그동안 그나마 지탱해왔던 환경정책에서 대폭 후퇴한 것일뿐



연성주
(서울경제신문 사회부기자)

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게 된 것으로 개정안심의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환경관련법안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3공정부에서 제정한 63년도 「공해방지법」. 그러나 이법은 당시 산업화우선 경제정책에 밀려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법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낯잠자는 법안이었다.

그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화·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잇따라 공해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77년도에 유명무실했던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다소 환경규제가 강화된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부터 실질적으로 환경법

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환경관련법안은 올해초 국회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법까지 포함해 모두 16개. 그만큼 환경관련업무가 세분되고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까지 이른 것이다.

배출시설·대기·수질·폐기물·자동차·법정의무고용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규제완화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 공해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사전허가제 폐지 ▲ 환경기술감리제 폐지 ▲ 농공단지입주조건 완화 ▲ 굴뚝자동측정기 전국확대계획 연기 ▲ 가벼운 환경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체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 봉인규정 삭제 ▲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횟수 축소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해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사전허가제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사업자가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해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환경기술감리단의 감리를 받아 현장을 방문해 적합판정을 내린뒤 허가를 내주던 것을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는 이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설치를 단지 신고만으로도 즉시 조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 이는 사전에 행정 기관이 배출시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공장가동뒤에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치만 가지고 단속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게다가 공장설립 과정에서 배출시설·공해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견잡을 수 없는 공해사태가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환경청은 “오염배출 사전규제를 사후신고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벌칙강화조항이 빠지고 오히려 공해배출업소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로 완화했다.

또 오염물질을 총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총량규제를 도입했지만, 오염물질을 총량규제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동 측정장치의 설치가 95년이후로 연기됐다. 자동측정장치는 각종 대기오염이 배출되는 굴뚝에 직접 설치, 이를 시·도환경감독기관에서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관할지역 공장들의 배출농도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총량규제를 하기 위한 자동측정장치는 울산·여천공단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측정장치설치가 연기된 이유는 기업들에게 설치비용을 가중시킨다는 단순 논리에 따른 것

으로 환경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환경관리인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현재의 환경관리인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나마 현재도에서 「대기환경관리인이 수질, 소음·진동

환경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로 포함으로써 환경관리인제도를 허수아비로 격하시켰다.

즉 환경관리인이 공장안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지는 소중한 직책이라는 사명의식과 제도적개선이 없는 한 자칫 기업의 방패막이가 될 우려가 높다.

이처럼 각종 환경규제법안들이 무더기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딛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갈수록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성장을 위해 환경을 버리는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

**지금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게다가 공장설립과정에서
배출시설·공해방지시설
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견잡을 수 없는
공해사태가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